질 병 관 리 본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법정감염병 병원체보유자 신고 철저 요청

1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1조 및 제14조 관련입니다.

2. 위와 관련하여, 법정감염병 중 '병원체보유자'가 신고범위에 해당하는 감염병(예.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(CRE) 등)의 경우, **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"병원체보유자" 신고의 의무**가 있어 환자가 타 병원으로 전원되거나 귀가하여 더 이상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경우에도 "병원체보유자" 신고가 필요합니다.

3. 이에, 의사나 의료기관이 환자의 타병원 전원 등의 이유로 **병원체보유자의 "감염병 발생 신고"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** 회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질병관리본부장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

보건연구사 **백수진** 보건연구관 **송정숙** 감염병총괄과장 전결 2020. 5. 18. **이동한**

협조자

시행 감염병총괄과-1710 (2020. 5. 18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미래질병대비과 / http://cdc.go.kr

전화번호 043-719-7112 팩스번호 043-719-7040 / bdpalm2@korea.kr / 대국민 공개